



교육품질 개선 규정

규정번호	2-1-18
제정일자	2013.06.10.
개정일자	2024.4.26
책임부서/팀·계	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의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평가, 조사, 개선 방안 도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2조(대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의 직제규정 제2조(기구), 제3조(부속기관), 제4조(부설기관)을 대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3조(평가) ① 대학은 교육품질 개선을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. <2024.4.26. 개정>

② 평가 대상은 제2조(대상)에 포함되는 행정부서를 대상으로 한다.

③ 평가방법은 행정부서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받고 결과를 교육품질 주관부서로 제출하며, 주관부서에서는 전체 부서의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④ 평가 내용으로는 해당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와 차기년도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, 평가 내용에 대하여 행정부서별로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 평가시 해당부서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⑤ 평가 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“총족, 미총족”으로 구분하며, 등급별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<17.12.11 개정>

[등급별 기준표]

구분	상태	비고
총족	사업 운영결과가 전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상태	
미총족	사업 운영결과가 전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, 차년도 사업계획에 보완 또는 개편이 필요한 상태	

제4조(만족도 조사) ① 교육품질 개선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주관부서는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, 조사 결과를 행정부서에 제공한다.

② 만족도 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.

제5조(교육품질 개선) 각 행정부서에는 교육품질 개선을 위해 매년 평가받은 사업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을 준행하여야 하며, 준행 여부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.

제6조(주관부서) 교육품질 개선에 관한 주관부서로는 기획처로 하고, 기획처장은 교육품질 개선을 위한 업무를 관할한다. <2021.08.20.개정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